

한국신뢰성학회 학술상 시상에 관한 운영세칙

2023. 10. 10. 제정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한국신뢰성학회(이하 이 세칙에서 '학회'라고만 한다) 학술상 시상
의 요건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상후보자 추천) 학회 운영위원 또는 3인 이상의 정회원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
있다.

제3조(수상자 추천) ① 수상자 추천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는 학술부회장 및 학술부회장이 지명한 2인의 학술업무담당이사로 구성한다.
단, 전조의 규정에 의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.

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.

④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연구업적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추천하며, 다수결로 결의한다.

제3조(추천기준) ① 심사위원회는 학회 회원으로서 다년간 신뢰성 관련 연구에 종사하여
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하고 학문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를 수상자로 추천한다.

② 종전 학술상을 수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.

제4조(심사) ① 수상자를 추천함에는 연구업적을 심사해야 한다.

② 전항의 심사는 전체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종전에 학술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
해서는 그 수상일 이후의 연구업적만을 심사한다.

③ 연구업적 평가시 신뢰성 이론 및 응용 분야의 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와 대표업
적의 인용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상자의 결정) 수상자는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회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시상시기) ① 학술상은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.

② 시상할 자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.

제7조(시상내용) 학술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한다.

<부 칙>

제1조 이 세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